

보도 일시	2022.12.20.(화) 국무회의 시작시(당일 석간 가능)	배포 일시	2022. 12. 19.(월) 오후
담당 부서	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태경 (044-200-5260)
		담당자	서기관 박솔잎 (044-200-5266)

공유수면 이용, 이렇게 관리합니다

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」이 국회 본회의*를 거쳐 12월 20일(화)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.

* 12.8(목) 국회 본회의 통과, 법률안 정부 이송을 거쳐 12.20(화) 국무회의 통과

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,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수요가 증가하고,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.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, 조업구역 축소,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.

그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미리 점용·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나,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*이 점용·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.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,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.

* 배타적경제수역, 국가관리무역항·연안항: 지방해양수산청
지방관리무역항·연안항: 시·도지사
그 외 공유수면: 시·군·구청장

이에 이번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·사용의 면적·방법 등의

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, 어업활동, 해상교통안전,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*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.

*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,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, 자연경관, 해상교통안전, 공유수면의 관리·운영 및 국가안보, 어업활동 등 수산업,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등

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“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,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현 행	개정안
제12조(점용·사용허가 등의 기준) <신 설>	제12조(점용·사용허가 등의 기준) ① 공 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·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·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1.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면적, 기간, 방법 등의 적정성 2. 「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」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. 해양환경, 해양생태계, 자연경관, 해 상교통안전, 공유수면의 관리·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.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. 제8조제7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 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<생 략 >	② (기존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

<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사례: 해상풍력 발전시설 >



<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사례: 해안 데크 >